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640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6.

발의자 : 양문석 · 김문수 · 최혁진
조계원 · 서미화 · 양부남
문대림 · 박수현 · 허성무
김동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· 피해아동 · 고소 · 고발인 · 신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및 사진을 출판물 · 방송매체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음.

그러나 피해아동 · 신고인 등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, 이를 근거로 학대 행위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 · 고발을 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공익적 보도의 위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일정한 요건 하에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5조).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아동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
 2.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
 3. 출판·방송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
 4.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출판·방송을 통하여 피해아동이나 고소·고발인 또는 신고인이 특정될 우려가 없을 것
 5.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을 것
-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출판·방송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</u></p> <p><u>3. 출판·방송의 내용이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</u></p> <p><u>4.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판·방송을 통하여 피해아동이나 고소·고발인 또는 신고인이 특정될 우려가 없을 것</u></p> <p><u>5.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을 것</u></p> <p><u>③ (현행과 같음)</u></p> <p><u>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출판·방송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--	---